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4일,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6.)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홍기원의원)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

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상기 규정의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반 형사범 또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용어로의 변경을 위한 논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순히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할 경우 개정안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그 대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류자격위반자”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안 등 보다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승원)

현행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자격위반자 외에 체류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개정할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인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삭제하고, “제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의 결함(제9조제1항제1호).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의결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현행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자격위반자 외에 체류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개정할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삭제하고,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 ----- ----- ----- ----- ----- ----- ----- ----- ----- ----- -----.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 ----- ----- ----- ----- ----- ----- ----- ----- ----- ----- -----.
1. <u>재한외국인</u> , <u>불법체류외국인</u>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1. ----- <u>체류자격위반자</u> ----- ----- ----- -----	1. <u>국내 체류 외국인</u>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 ----- ----- ----- ----- ----- -----.
1. <u>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u>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1. <u>국내 체류 외국인</u>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